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91
------	------

제출일자 : 2025. 05. 29.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직장·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가 설립되어 새마을운동조직에 이를 추가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새마을운동조직에 직장·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 추가(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 2025. 4. 30. ~ 2025. 5. 20.(20일 이상)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새마을문고중앙회금천구지부”를 “새마을문고중앙회금천구지부, 직장·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금천구지회, 새마을 지도자금천구협의회, 금천구새마을부녀회, <u>새마을문고중앙회금천구지부</u> 를 말한다.	1. ----- ----- ----- ----- ----- ----- <u>새마을문고중앙회금천구지부, 직장·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u>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자치행정과 주민참여팀 이병인
연 락 처	2627 - 2206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0. 14.]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81호, 2016. 10. 14.,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금천구지회, 새마을 지도자금천구협의회, 금천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금천구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매년 법에서 정한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사업 실시
2.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
3. 불우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경비
3.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연수 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새마을기 게양)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각 동 주민센터 청사, 그 밖의 구 산하 공공기관 청사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 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 계 법 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약칭: 새마을조직법)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766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